50+단체지원 공모사업
협약식 및 워크숍

2017. 4. 12.(수) 10:00~18:00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
Seoul 50 Plus Foundation

50+단체지원 공모사업 협약식 및 워크숍 개최

50plus.or.kr

Ⅰ 행사 개요

○ **행사목적**

- 2017년 50+단체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정공모(5개) 및 자유공모(16개) 수행 단체와 협약을 체결
- 재단 지원금시스템 사용 방법 및 회계 지침 안내
-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일　　시 : 2017. 4. 12. (수) 10:00~18:00**

○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참석대상 : 2017년 50+단체 공모사업 선정 단체 21개**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비　고
10:00-12:00	**지원금 시스템 교육**	컴퓨터실(3층)	우리은행
12:00-13:30	**중식**	외부 식당	
13:30-14:00	**오리엔테이션**	모두의강당(4층)	
14:00-14:30	**협약식***	모두의강당(4층)	
14:30-17:30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 이재현 NPO 스쿨 대표	모두의강당(4층)	
17:30-18:00	**기타 토의 및 마무리**	모두의강당(4층)	

* 협약식에서는 실제 약정서를 작성, 교환하고 향후 실행계획서 작성이 완료된 후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

Ⅱ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 작성

○ 제출기간 : 2017. 4. 13.(목) ~ 4.26.(수) 18:00

○ 제출내용 : 프로젝트 실행계획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eoul@50plus.or.kr)

○ <u>실행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u>

- 수행단체는 공모사업 집행지침 등을 숙지한 후 50+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행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지원금+자부담)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계획, 지원금 집행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료일은 2017년 10월 31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산서는 「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인건비/사업운영비로 크게 구분하고, 세부 활동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행계획서 작성 워크숍

○ 기간/장소 : 2017. 4. 12(수) 14:30~17:30

○ 주　　관 : NPO 스쿨 이재현 대표

○ 대　　상 : 수행단체 전체

○ 내　　용 : 실행계획서 작성, 예산산출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워크숍

❑ 1:1 현장 컨설팅 실시

○ 기간/장소 : 2017. 4. 13.(목) ~ 4. 19.(수) 예정, 단체 사무실

○ 주　　관 : 공모사업 컨설팅단 및 담당 PM

* 컨설팅단 : **고선강**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창호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현 NPO스쿨 대표

○ 내　　용 : 프로젝트 실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서 등 사업전반 맞춤 컨설팅

○ 추진방법

- 수행단체로부터 실행계획서 접수 후 현장 컨설팅 실시
- 수행단체 사무실 방문일정 확정(재단↔50+단체)
- 컨설팅단이 실행계획 분석 후 담당 PM이 현장방문 컨설팅
- 수행단체는 컨설팅 내용을 반영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제출

❑ 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재단)

○ 수행단체가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프로젝트 개요, 추진계획, 지원금 집행계획 등)이 예산편성 기준 등 작성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 약정을 체결.

※ 사전 컨설팅을 받지 않은 단체는 협약 체결 불가

Ⅲ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협약체결 기간 : 2017. 4. 24(월) ~ 4.27(목), 09:00 ~ 18:00

○ 협약체결 장소 :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복지타운 3층)

○ 제출서류

① 실행계획서 1부(붙임 1)

② 지원금 교부신청서(붙임 2)

③ 약정서 2부(붙임 3, 재단에서 준비 예정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지원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⑥ 자부담 예치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⑦ 청렴이행 서약서(붙임 4)

⑧ 협약보증금지급각서(붙임 5)

⑨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붙임 6)

⑩ 정보활용 동의서(붙임 7)

⑪ 단체 직인(협약서 날인용)

○ 협약체결 유의사항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수행단체로 합니다.
- 수행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단체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수행단체는 지원금 전용통장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 통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확정 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단은 수행단체의 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수행단체가 재단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재단이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행단체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체결 체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 단체명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됨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우리은행에 문의

※ 지원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지원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기존 (서울시)보조금통장 등은 활용 불가

2017년 50+단체 지원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50plus.or.kr

1. 예산편성 및 집행 원칙

◎ 지원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각 사업 비목(편성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해야 함

◎ 지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기본운영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이행보증보험료, 회의 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지원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지원금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을 (신규)개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승인 없이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 조치합니다.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민간공모사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 교부, 검사합니다.

2.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업소

◎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극장식당 등

* 일반유흥주점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등)

* 기타 주점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위생업종** 이미용실, 네일아트,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스크린골프,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멀티방, 당구장, 헬스장, 기원, PC방, 스키장

◎ **사행 및 기타**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스크린)경마,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

3.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2017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표

항목	비목	내 용		기준 및 한도	비 고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비용		실비정산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으로 한함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단기) 임차료	단기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		실비정산		
	여비 및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내 여비	4시간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월 최대 15회)	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T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지원금 지출가능	여비지급내역서(서명), 출금확인증 또는 T머니교통카드 영수증
			시외 여비	실비정산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지원금으로 지출가능	카드영수증, 출장증빙자료 (회의록 등)
			숙박비	1인 1실 5만원	실비정산(1박)	
	식비	사업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1인 7천원 이내	실비정산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서명)
	다과비	사업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1인 3천원 이내	실비정산	

항목	비목	기준 및 한도		비 고	증빙서류
인건비	강사비	특별강사	1시간: 30만원 2시간: 50만원	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2만원	30분 미만: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1시간: 4만원 2시간: 8만원		
	공연비	5인 이하 : 40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 60만원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 다수인 출강도 적용	
	회의비	2시간미만 10만원 2시간이상 15만원		1일 1회에 한함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원고료	1매: 15천원 1권: 50만원(최대)		A4용지 1매 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여백 상하 15㎜, 좌우 25㎜ -ppt 자료는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함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 제외	원고 사본,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번역료	외국어▸한국어: 3만원 한국어▸외국어: 6만원 외국어▸외국어: 6만원		A4용지 1매(250단어 또는 800자) 기준	번역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통역료	1시간 미만: 50만원 6시간 까지: 80만원		동시통역사 자격 소지자에 한함 1일 6시간 초과: 자부담 책정	통역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단순 인건비	1시간 : 8,200원		1인 : 1일 8시간, 월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대표자, 실무책임자, 주요 운영진, 등기 이사 및 비상근자 포함)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통·번역료는 행사 목적과 규모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최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기준단가까지 지원 가능
* 위 지원금의 편성 및 집행은 당해 사업에 꼭 필요할 때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편성항목에 없는 국외여비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각종 공모사업 주요 지적 사례

◎ 당초 지원금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편성항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지원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 단체 내부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

◎ 강사, 회의 및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세액)를 하지 않은 경우

◎ 강사, 회의,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쇄, 현수막, 물품구입 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업주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지출결의서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강사비 및 전문가활용비 등 활동비성 경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을 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경비 지급 시 지침 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 지원금 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 예금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거래내역서가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문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실 / 유태안 PM / 070-8852-6122 / yoo@50plus.or.kr

2017년 50+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단체 및 프로젝트

50plus.or.kr

50+

1 지정공모 선정단체

접수번호	프로젝트명	단체명	비고
1	1, 3세대 교류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서대문구
2	기초생활수급자 수납장 제작 보급 사업	에너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구로구
8	독거노인안전망구축사업	아파트생활개선사회적협동조합	중랑구
45	서울 전통시장 소셜 방송 50+ 크리에이터 만들기	제3커뮤니케이션협동조합	동작구
55	은평구 학교 및 유아원과 연계한 은평마을 이야기꾼 양성	허스토리마실협동조합	은평구

2 자유공모 선정단체

접수번호	프로젝트명	단체명	비고
5	50+, 커뮤니티로 다시 通하다	더함플러스협동조합	
11	50+세대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공헌확산	케이피오명강사협회	
13	나의 Storytelling 과 재능발견, 사회참여 프로젝트	시민행복공공서비스협동조합	
15	사무직 퇴직자를 위한 제 3섹터 취업가이드 북 제작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17	2017년 바라봄 50+ 사진촬영봉사 “더하기”	바라봄	
20	50+ 생애진로설계 퍼실리테이터 양성	심온사회적협동조합서울지사	
29	도시농부들이 도시텃밭에 토종종자를 재배하게 하라	도시농업전문가협동조합	
33	은퇴자의 변화관리와 나눔의 사회적응 프로젝트	시앤주아카데미협동조합	
36	50+세대 서울골목탐험대 운영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38	50+세대 지역시민활동가 양성을 통한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한국진로직업개발원	
39	민주시민 공동체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사단법인 시니어라이프	
49	5070살림왕-생활안전건강 코디양성 및 안전캠페인	블루환경교육센터-여성두몫회	
53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약초학교	이풀약초협동조합	
58	빠빠케어 -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	아빠학교협동조합	
60	50+ 마을 일자리 탐험대 사업	뚜벅뚜벅사회적협동조합	
63	경력단절여성, 인생2막 ‘SNS’로 설계하기	케이에스피협동조합	